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8. 18 선고 2020나117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말소등기청구]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8. 18 선고 2020나11761 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 8. 13 선고 2019가합7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노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수

변론 종결2021. 7. 7.

판결 선고2021. 8. 18.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 8. 13. 선고 2019가합7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 7. 4. 접수 제124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②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 7. 24. 접수 제139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③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 7. 24. 접수 제139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①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전인 2018. 10.경 전북대학교병원·H병원에서 작성된 원고의 진료기록 또는 소견서 내용, ②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직후인 2019. 8.경과 2019. 9.경 작성된 J병원·전북대학교병원에서 작성된 원고의 진료기록 내용, ③ 성년후견개시 사건 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서 내용, ④ 당심 변론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이미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까지 고려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다액의 치료비를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1심판결 내용은 '처와 자식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평안히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원고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해 보이기도 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재판장판사김성주

판사김봉원

판사조찬영

별지

1) 제1심에서 원고의 소송대리권 위임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① 제1심판결 선고 이후 법원이 성년후견인에게 '제1심 소송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급'을 허가하였던 점(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 10. 7.자 2020느단111 결정), ② 법원이 성년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당심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및 소송대리인 선임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하였던 점(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 9. 29.자 2020느단102 결정), ③ 이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김영노 변호사를 당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던 점, ④ 당심 소송대리인이 제1심에서 있었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의미로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제1심 변론결과'를 진술하였고, 이후에도 제1심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변론하였으며, 변론종결 이후 다시 이를 추인하는 취지의 참고서면(2021. 7. 20.자)을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게 선임된 원고의 당심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 제기 및 제1심에서 있었던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1심에서 있었던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하다.